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업무편람

〈점포철거비 지원〉

2023.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 편람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세부운영을 위해 지원정책 정보 및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서식을 포함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개 요	1
--------	---

II.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3
----------------	---

◆ 지원 절차	3
---------	---

1. 신청서류(1차) 제출 및 접수	4
---------------------	---

2. 담당자 배정 및 서류검토	5
------------------	---

3. 사전진단(현장 방문)	6
----------------	---

4. 점포철거 진행	6
------------	---

5. 정산서류(2차) 제출 및 접수	7
---------------------	---

6. 승인완료 및 비용지급	8
----------------	---

[참고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9
-----------------------	---

[참고2]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11
------------------------------------	----

[참고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12
-------------------	----

[참고4] 평균 매출액 산정	13
-----------------	----

[별지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용]	14
------------------------------------	----

[별지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15
--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16
--	----

I. 개 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참고2] 참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참고1]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 (범위)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

* 전용면적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17.3평→18평)

○ (지원제외)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참고2] 제외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해야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 발급분을 인정함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

* 위임장은 자유서식으로 작성·제출하되, 4페이지 하단 '**위임장 필수 포함 내용**' 참고

□ 신청 및 정산서류(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2회 제출-노란색 음영)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1차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③ 영업신고증(공단 요청 시)
	행망서류 ▲ 공단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공단 요청 시)
	정산서류 ▲ 신청인 2차 제출	① 폐업사실증명
		② 공사내역서(견적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⑤ 점포철거 전·후 사진(내부, 외부)
		⑥ 통장사본

□ 지원절차

신청서류 제출 (1차 제출)	➡	지원요건 검토· 사전진단(철거예정)	➡	정산서류 제출 (2차 제출)	➡	정산서류 검토· 비용확정	➡	비용지급
온라인 (소상공인)		서류·현장 (공단·용역사)		온라인 (소상공인)		서류검토 (공단·용역사)		계좌이체 (공단)
-		2~3주		-		2~3주		1~2주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 지원 절차

세부내용	주 체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서류(1차) 제출	신청인 → 공단	신청완료
↓		
담당자 배정	공단	담당자배정완료
↓		
신청서류 검토 (소상공인·임차인 여부 등)	공단(용역사)	사전진단
↓		
사전 진단 (철거예정자)	용역사 → 신청인	사전진단완료
↓		
철거 진행 (철거예정자·기철거자)	신청인 ↔ 철거업체	-
↓		
정산서류(2차) 제출	신청인 → 공단	서류제출완료
↓		
철거 및 폐업 여부, 거래내역 등 검토	용역사	-
↓		
정산서류 보완 요청	용역사 → 신청인	서류제출반려
↓		
정산서류 검토 완료	용역사	정산/보완완료
↓		
최종 검토	공단	승인완료
↓		
비용 처리	공단 → 신청인	비용지급

1 신청서류(1차) 제출 및 접수

- 신청인은 점포철거비 지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자가 체크한 후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원스톱폐업지원
- 접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My Page)-“점포철거비지원” 메뉴에서 신청 목록의 진행상태 “신청완료” 상태 확인
- * “신청 중”은 완료된 것이 아니며, [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생성되는 [완료] 버튼 반드시 클릭

< 점포철거비 신청서류(1차) >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목적 공간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발급 ** 겸용주택(주택 및 기타용도 혼재)은 검토 후 판단 *** 건축물대장 발급 불가 시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 제출
	③ 영업신고증(공단 요청시)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불일치 시 제출
행망 서류 ▼ 공단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행망동의 시 미제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행망동의 시 미제출 (간이과세자) 미제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동의 시 미제출 • 지원사업 신청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④번 함께 제출
	④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공단 요청시 신청인이 별도 제출)	• 고지인원 확인 후 인정 * [참고3]의 산정기간에 따라 제출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사업장 주요 서비스-보험료산출내역조회-전체 보험 선택 및 고지년도 입력-출력하기 순으로 조회 • 월 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My홈택스-신고 원천세 목록조회-기간입력-보기 순으로 조회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자유서식) 제출 필수

- 위임장 필수 포함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문구,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② 담당자 배정 및 서류검토

- 공단은 신청 완료된 접수내역에 대하여 담당자를 배정함
 - 담당자는 행망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1차)를 검토
 - 행망서류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에 응해야 함
 - 공단의 서류 보완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소재지가 일치하는 이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를 증빙하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신청인은 철거 전·후 사진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인정할 수 있음

1)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면적 결정 방법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불확실한 경우(약00평, 공용면적 포함 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확실한 경우(건물 전체면적 표기 등),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②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모두 불확실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여 작은 면적으로 판단
 - 필요시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면적 기재 요청 및 영업신고증 제출 요청

2) 매출액 신고이력이 없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 방법

- < 4가지 경우 중 택1하여 제출 >
- ① 매출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②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
 -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에만 신고 가능하여 위 방법 불가
 - 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또는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 * 폐업상태의 경우에는 발급 불가
 - ④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함께 제출
 - *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조회 :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월별 매입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발행분 조회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③ 사전진단(현장 방문)

- 공단(용역사)은 서류검토가 완료된 신청인(철거 예정자)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을 진행
 -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공단(용역사)은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존재 여부, 신청인과 점포 계약당사자의 일치여부 등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공단(용역사)은 철거가 이미 완료된 기철거자라도 임차목적물 및 지원여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공단(용역사)은 철거예정자에 대한 사전진단(현장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검토 후 “사전진단 완료” 처리함

④ 점포철거 진행

- 철거예정자의 경우 사전진단 완료 후 점포철거를 진행하여야 함
- 철거업체는 신청인(철거예정자·기철거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진행 하며, 자력으로 진행한 철거는 지원 불가
 - 철거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함
- 철거 범위는 사업장 전체 철거, 부분 철거 모두 가능하나, 철거할 물품을 양도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철거비용을 철거업체에 현찰로 지불하여 이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임차자산(에어컨, 정수기 등)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지원 불가
- 자가건물 및 무상 임차한 건물의 철거를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⑤ 정산서류(2차) 제출 및 접수

- “사전진단 완료” 처리된 신청인에게는 정산서류(2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인은 문자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한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점포철거비 정산서류(2차)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출력 가능 ※ 접수증 불인정
② 공사내역서(견적서)	• 공사 내역별 소요비용 및 총 금액 기재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요청) * 공급자(철거업체)·공급받는 자(신청인) 정보 기재 必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종이(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단, 세무서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통지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출 시 인정 • 폐업상태인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요청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전표 제출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 철거업체가 아닌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정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함(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수취인이 철거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현금거래 불인정 * 무통장입금의 경우, 위 '포함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 제출 시 인정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일시불/할부)한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을 증빙하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카드사를 통해 발급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 진행 시,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원상복구 비용 공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로 대체
⑤ 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⑥ 통장 사본	•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및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가족 외 제3자 계좌로 지급 희망 시 [별지 1~3] 모두 작성 후 함께 제출

- 신청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대하여 홈택스 휴폐업조회를 통해 폐업여부 확인 후, 폐업하지 않은 경우 지출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의 철거업체명(대표자명), 철거비용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단, 이체확인증의 경우, 명시된 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수취인이 철거업체로 확인되면 비용지급 가능
- 공단의 서류 보완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⑥ 승인완료 및 비용지급

- 정산서류(2차)에 이상이 없을 시 공단은 승인 완료 처리하며, 실행 비용 최종 검토 후 비용지급
 - 비용지급은 실제 공사 소요비용으로 지급하되,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로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함
 - 비용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타인계좌(배우자, 직계가족, 그 외 제3자)로 지급할 수 있음
 - * 배우자 및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희망 시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 그 외 제3자 계좌로 지급희망 시 통장사본+[별지1~3] 작성 후 서명본 함께 제출
- 해당 사업자(신청인)가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보류 및 탈락취소 할 수 있으며,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이후라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타부처·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지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지급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참고 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①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②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시 ③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1. 11. 20	'23. 6. 23	(직전 사업연도) '22년 1월~'22년 12월
예시2	'22. 3. 5		(최근 12개월) '22년 6월~'23년 5월
예시3	'23. 1. 20		(개업월~최근) '23년 1월~'23년 5월

참고 4 평균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예시 ①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②, ③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④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⑤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평균 매출액 산정기간
예시1	'19. 8. 20	'23. 6. 23	(직전 3개 사업연도) '20년 1월~'22년 12월
예시2	'20. 3. 5		(직전 2개 사업연도) '21년 1월~'22년 12월
예시3	'21. 3. 5		(직전 사업연도) '22년 1월~'22년 12월
예시4	'22. 3. 5		(최근 12개월) '22년 6월~'23년 5월
예시5	'23. 1. 20		(개업일의 익월~최근) '23년 2월~'23년 5월

별지 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작성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희망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희망계좌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희망계좌 이용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희망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신청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빈 칸에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신청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인(신청인 성함)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 성함)에게 지급될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성함)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점포철거비 지원금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예금주), 생년월일, 연락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금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